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7,295,331	9,218,860
일반회계	285,767,965	8,573,039
특별회계	21,527,366	645,821
기타특별회계	21,527,366	645,82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5,320	21,160
주택사업특별회계	560,895	16,82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62,039	28,8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94,144	29,82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84,204	47,526
주차장특별회계	311,606	9,348
수질개선특별회계	15,566,420	466,99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82,738	20,482
기반시설특별회계	160,000	4,8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87,64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